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이 세 열 의원

안녕하십니까?
마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세열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”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는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,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 및 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는 등 근무자의 직무열의를 감소시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근절하며 직장 내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
동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